

##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5조,”를 “제4조의7, 제5조,”로 한다.

제4조의7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7(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)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(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”란 도로 · 도로변 · 광장 · 공터 · 주민회관 · 시장 · 점포 · 공원 · 운동장 · 주차장 · 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.

1. 선박 · 여객자동차 · 열차 · 전동차 ·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
2. 병원 · 종교시설 · 극장 · 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(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)

제10조의2(금리인하 요구 등)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
1.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,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
2.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
④ 조합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,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, 절차 및 기록의 보관·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15조의4 중 “제18조의3제2호”를 “제18조의4제2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 
제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고되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장 · 점포 · 공원 · 운동장 · 주차장

· 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 
공개된 장소를 말한다. 다만,  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
는 장소를 제외한다.

1. 선박 · 여객자동차 · 열차 · 전  
동차 ·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 
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

2. 병원 · 종교시설 · 극장 · 조합  
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(담장이)  
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  
함한다)

### <신 설>

제10조의2(금리인하 요구 등) ① 금  
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시행  
령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 
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  
를 판단할 수 있다.

1.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,  
계약을 체결한자의 신용상태가  
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  
니한 경우

2.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 
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 
아니하는 경우

② 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  
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  
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

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  
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 
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
④ 조합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,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  
인하 요구의 안내, 절차 및 기록의  
보관·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 
정할 수 있다.

제15조의4(외부감사인 변경) 시행  
령 제18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  
하여 “금융위가 정하는 기준”이라  
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
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  
는 금액(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 
경우에는 1억원)을 말한다.